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재무감사

2015년 상반기 재무감사 결과 보고

2015. 10.

 감 사 실
한국국토정보공사

||| 목 차 |||

| | |
|--------------------------------|---|
| I. 감사실시 개요 | 1 |
|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
|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
|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
| 4. 감사중점사항 | 1 |
|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 2 |
| 1. 상반기 사업실적 | 2 |
| 2. 상반기 사업실적 비교 | 2 |
| III. 감사결과 | 3 |
| 1. 총 평 | 3 |
| 2. 지적사항 총괄 | 4 |
| 3. 지적사항 요약 | 4 |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5 |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5 |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5 |
| 2.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 5 |
| V. 기타사항 | 5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2015년 상반기 결산서, 재무제표, 기타 부속서류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재무정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우리공사의 대외공신력 확보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및 ▲▲▲▲▲▲원, △△△△△△원, 12개 본부 등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상반기 결산서, 재무제표, 기타 부속서류 등 각 기관 회계업무 처리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기간 및 인원

2015년 8월 3일 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3일간 감사실 3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외 3인(4인)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하였다.

4. 감사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의 적정성, 총당부채 및 소송비용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잠재적 경영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상반기 사업실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단위 : 백만원)

| | | | |
|-------|------------------------------------|-----|---------|
| I. | 사업수입 | (+) | 215,228 |
| II. | 사업비용 | (-) | 200,722 |
| III. | 사업손익(I - II) | | 14,506 |
| IV. | 기타수익 | (+) | 2,206 |
| V. | 기타비용 | (-) | 5,653 |
| VI. | 기타손익 | (+) | 811 |
| VII. | 금융수익 | (+) | 979 |
| VIII. | 금융원가 | (-) | - |
| IX. | 법인세차감전성과 (III+IV-V+VI+VII-VIII) | (+) | 12849 |
| X. | 법인세비용 | (-) | 3,109 |
| . | 당기순이익(IX-X) | | 9,740 |

2. 상반기 사업실적 비교

[2015년도 상반기 사업실적표(K-IFRS)]

(대한지적공사)

(단위 : 백만원)

| 과목 | 당기 | | 전기 | | 증감 금액 | 비고 |
|-------------|---------|---------|---------|---------|----------|----|
| | 금액 | | 금액 | | | |
| I 사업수입 | | 215,228 | | 197,785 | 17,443 | |
| 1. 측량수수료수입 | 215,228 | | 197,785 | | | |
| II 사업비용 | | 200,722 | | 199,096 | 1,676 | |
| 1. 업무비 | 172,986 | | 173,541 | | | |
| 2. 관리비 | 27,786 | | 25,555 | | | |
| III 사업손익 | | 14,506 | | △ 1,311 | 15,567 | |
| IV 기타수익 | | 2,206 | | 911 | 1,295 | |
| V 기타비용 | | 5,653 | | 7,140 | △ 1,487 | |
| 1. 기술원양성비 | 2,298 | | 2,323 | | | |
| 2. 연구사업비 | 3,067 | | 4,575 | | | |
| 3. 기부금 | 40 | | 35 | | | |
| 4. 잡손실 | 35 | | 56 | | | |
| 5. 투자부동산상각비 | 142 | | 151 | | | |
| 6. 기타의대손상각비 | 71 | | | | | |
| VI 기타손익 | | 811 | | △ 18 | 829 | |
| VII 금융수익 | | 979 | | 943 | 36 | |
| VIII 금융원가 | | 0 | | 59 | △ 59 | |
| IX 법인세차감전성과 | | 12,849 | | △ 6,674 | 19,473 | |
| X 법인세비용 | | 3,109 | | △ 1,615 | 4,712 | |
| XI 당기순이익 | | 9,740 | | △ 5,059 | 14,761 | |

Ⅲ. 감사결과

1. 총 평

2015년 6월 30일 현재의 상반기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상반기 손익계산서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및 회계사무처리 규칙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공사의 재무규정, 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다만, [표-1]의 상반기 결산감사 외부감사인 의견 중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항은 관련부서에 별도의 문서를 시행하여 의견을 전파하고 본 결산 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처분요구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표-1] 상반기 결산감사 외부감사인 의견

| 제목 | 주요 내용 | 후속조치 |
|------------------------------|--|---------------------|
|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향후 효과 추정 |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총당부채 계상 필요 | 감사결과 처분요구 |
| 소송관련 비용의 손익귀속시기 확립 | 변호사 보수 등은 지출한 회계연도에 비용계상 해야함 | 감사결과 처분요구 |
| 종전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검토 |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기 위해 '15년 내에 종전부동산 매각 필요 | 별도 문서 통보 (경영지원실) |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성 | 고령노동자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개선 필요 | 별도 문서 통보 (기획조정실) |
| 중장기 영업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의 권고 |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낭비성 지출 최소화등 자금의 효율적 집행 필요 | 별도 문서 통보 (기획조정실) |
| 전세보증금지원관련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검토 | 해당 보증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 - |
| 기말회계감사 금융기관조회서 발송에 대한 대체적 절차 | 금융기관 조회서와 은행연합회 월보조회를 통해 회계감사 실시 | 2015년 기말 회계감사 시 실시 |
| 사명변경에 따른 각종 규정의 명칭변경 필요 | 일부 규정에 공사명이 '대한지적공사'로 표기 | 내부규정 운용실태 성과감사 시 점검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천원, 명]

| 구분 | 계 | 행정상조치 | | |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인원) | | | 현지 처분 | 제도 개선 | 모범 사례 |
|------------|---|-------|----|----|----|-------|----|-----------|----|----|----------|----------|----------|
| | | 통보 | 사정 | 개선 | 권고 | 회수 | 지급 | 징계 | 문책 | 고발 | | | |
| 건수 (인원) | 2 | 2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3. 지적사항 요약

① 총당부채 계상 업무 소홀{통보}

대법원의 통상임금범위 변경 판결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였고, ●●지법 2015☒☒ 2897소송이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에서 정하고 있는 총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예상 지급액을 측정하여 총당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함

② 소송관련지출 손익귀속시기 처리 부적정{통보}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15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공탁비용·공고비등의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소송비용 이외의 소송관련 비용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을 선급금·미수금등으로 계상하고 있음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명, 원)

| 일련 번호 |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 건 명 | 처분요구 | | | 조치 기한 | 감사자 |
|----------|---------------------|----------------------|-------------|-------------|-------------|----------|-------------|
| | | | 행정상 조치종류 | 재정상 조치금액 | 신분상 조치인원 | | |
| 2-1 | 본사/○○처 | 총당부채 계상 업무 소홀 | 통 보 | - | - | 1개월 | 감사실 회계법인 |
| 2-2 | 본사/○○처 | 소송관련지출 손익귀속시기 처리 부적정 | 통 보 | - | - | 1개월 | 감사실 회계법인 |

□ 행정상 조치 : 2건 <2건(통보)>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 제 목 | 처 분 내 역 | | | | |
|-------------|---------|----|----|----|--------|
| | 조치양정 | 소속 | 직급 | 성명 | 관련지적사항 |
| ①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2.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단위 : 천 원, 명)

| 일련 번호 | 제 목 |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 조치 사항 | 금액 | 인원 | 감사자 |
|----------|-----------|---------------------|-------|----|----|-----|
| 1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V.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등

- 처분요구사항 및 외부회계감사인 의견 관련부서 통보

2. 붙임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부.

② □□회계법인 상반기 검토 결과 보고서 1부. 끝.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총당부채 계상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본사 ○○처

내 용

1. 통상임금범위 변경 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발생

「급여규정」 제3조 5호는 ‘봉급과 대우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는 대법원의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¹⁾에 따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 1.)’을 배포하며 소정근로의 대가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정기성)·일정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근로성과와 무관하게 확정(고정성) 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적용했을 때 「급여규정」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과소지급한 것이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발생 시 총당부채 계상 요건 충족

2015년 반기결산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라 ■■■외 3,205명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청구를 제기한 ‘▲▲지법 2015○○ 2897’소송을 우발부채로

1) 1 임금지급기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공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회사가 부담하는 현재의무 중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의무로 인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낮거나 유출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우발부채로 재무제표 주석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원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회계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²⁾를 개최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로 회사가 임금을 추가 지급할 법적의무가 발생하였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박사수당, 민원창구수당, 가계지원수당, 효도수당, 내부평가급’등의 각종 수당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수당이 있는지 검토하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반기결산서는 ‘▲▲지법 2015○○ 2897’소송을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을 뿐 △△△△부의 통상임금 범위 변경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충당부채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통상임금 범위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에 따라 공사의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재무상태표에 적절하게 표시되고 있지 않다.

2) 2013년 제4회 회계기준 적용이슈 간담회 개최('13. 12. 27.)

조치할 사항 사장(○○처장)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예상지급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소송관련지출 손익귀속시기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사 ○○처

내 용

공사는 공탁비용, 공고비, 감정비용등의 소송비용과 사건착수금·사례금등을 지출하는 시점에 선급금 또는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15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착수금·사례금·보수 등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법」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집행기준에 따르면 판결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귀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귀속이 결정되는 변호사 보수, 사건착수금, 사례금 등은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반기결산서는 변호사 보수, 사건착수금, 사례금등을 지출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미수금 또는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지연 인식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사장(○○처장)은 변호사 보수, 사건착수금, 사례금등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지출 시 귀속이 확정되는 비용을 미수금·선급금등의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